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10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하.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의 실체적,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6/9/8 개정 · 2026/12/9 시행)

1) 개정 이유

□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의 실체적,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합병 등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제165조의4, 제165조의5)
 -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 · 자산의 양 · 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 시
 - 순자산, 발행주식총수,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의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고려
 -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 · 공시하고,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시할 의무 발생
 -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를 추가적으로 공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 확대)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6/9/9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ETF·ETN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지수 또는 특정 산업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 확대(제6-7조 제7항)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통한 ETF·ETN(단,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거래 허용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2026/9/23 개정·2026/10/2 시행)

1) 개정 이유

- ☐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제7조,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등)
 -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수사)-공소청(기소)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동 규정상 관련 용어를 정비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운영사항 추가(제47조 제3항 신설)

- 관련 법령의 개정, 개편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동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가총액 미달 요건 상향 조정 계획 유예)
-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 신설)
-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ETN LP 보유수량 변동 신고기한 정비)
-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 신설에 따른 매매제도 정비)
- 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위반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간외접속매매시 접속매매로 인한 시장 안정 목적 제도 추가 정비)
-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저PBR기업 선정요건 구체화)
-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종목 명시)
-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운영시간 이후 보도 등 확인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명확화)
-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타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 관련 요건 및 절차 신설)
-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에 따른 세부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유동성공급의무 면제 관련 조문 정비)
- 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매입인도 전 납부기한 변경)
- 하.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6/9/2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 ‘금융 · 외환 · 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2026.9.4,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시가총액 미달 요건 상향조정 계획을 6개월 유예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시가총액 미달 요건 상향 조정 계획 유예(부칙 <제2342호, 2025. 7. 9.> 제4조)

— 시가총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상향 조정(300억원 → 500억원) 계획을 2027.1.1.에서 2027.7.1.로 유예

적용기간	시가총액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00억원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00억원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9/23 개정 · 시행)

— 부칙 <제2440호, 2026. 5. 13.> 제2조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6/9/9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글로벌 선진시장의 24시간 거래체계 전환에 맞추어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를 신설하고, 정부 부처 명칭 변경 및 국채시장 조성제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 신설(제4조)

- 정규시장과 같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하여 시장참여자의 참여가 용이한 방향으로 시간외접속매매를 도입
 - 시간외접속매매 거래시간은 당일 16시부터 20시까지로 장 종료 후에 한정
 - 해당 종료시간에 맞추어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도 매매거래종료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
 -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증권의 종류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위임

□ 시간외접속매매시 접속매매로 인한 시장 안정 목적 제도 추가 정비(제16조, 제26조의2,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의4)

- 사이드카는 시간외접속매매에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규정상 발동시간을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문구 추가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시간 중 당일 18시부터 20시까지는 시간외접속매매시간과 중복됨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사이드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오인 해석 가능
- 변동성완화장치(VI)는 접속매매에서 가격제한폭과 함께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장치임에 따라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도입
 - 최초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VI가 발동되며, 이 경우 정규장 종가를 참조
-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 또한 접속매매시 시장가격과 괴리된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시간외접속매매에 도입

- 정부 부처 명칭 변경 관련 조문 정비(제55조 제2호 · 제3호 가목)
 - 「정부조직법」개정(2026.1.2)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
- 전문딜러의 양방의 조성호가 제출 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제55조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2항)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26.2.23)에 따라 전문딜러의 양방의 조성호가 제출 대상이 일부 비지표종목으로 확대되어 관련 조항 정비
- 기타 조문 정비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2025.11.11)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제5조)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회원의 범위가 명확하도록 유동성공급회원을 정의(제20조의2, 제20조의4)
 - 시간외접속매매가 시간외단일가매매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제34조의2)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9/14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연장(18시→20시)에 따라 ETN 시장의 LP 보유수량 변동 신고의 신고시한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N LP 보유수량 변동 신고시한 정비(제123조의9)
 -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변동내역을 반영하도록 신고시한을 18시 30분에서 20시 10분으로 조정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9/11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신설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관련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 신설에 따른 매매제도 정비사항으로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종목 명시(제51조의4)

- 시간외접속매매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 등 제외
 -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ETF·ETN 등

□ 시간외접속매매에서의 호가 입력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3, 제130조의2)

- (호가접수시간) 당일 16시부터 20시까지로 시간외접속매매 거래시간과 동일
 - 해당 거래시간에 맞추어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도 호가접수종료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
- (호가의 유형 및 조건)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하며, IOC, FOK 조건 부여 가능

- ▷ IOC: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 ▷ FOK: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 (호가의 효력) 시간외증가매매의 호가는 시간외접속매매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위험관리장치) 시간외접속매매도 정규시장과 동일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임에 따라 알고리즘 거래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SMP), 접속해제 호가 취소(COD), 계좌단위호가처리(Kill Switch)의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근거 마련

- ▷ SMP(Self Match Prevention):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가 결합된 번호)가 동일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로부터 제출된 호가간의 매매체결을 사전에 방지
- ▷ COD(Cancel On Disconnect): 전산오류 등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상황 시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에 한정되지 아니함
- ▷ Kill Switch: 회원이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알고리즘거래계좌별로 호가의 일괄취소 또는 추가 호가의 미접수 조치 신청 가능

□ 시간외접속매매시 시장 안정 목적 제도사항 정비(제25조, 제35조, 제42조, 제47조의2, 제47조의4)

- (공매도)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함에 따라 업틱룰*, 업틱룰 예외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업틱룰: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음
 - 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정규장 종가를 직전가격으로 참조
- (매매거래정지 등)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임시정지, 종목별 매매 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전산장애에 따른 호가의 취소, 호가접수의 정지 및 매매거래의 중단이 가능

- 정지·중단 이후 매매거래의 재개는 접속매매로 결정하나, 해당 사유 발생 이전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된 경우 단일가매매로 결정
 -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 접속매매시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시간외접속매매에도 적용
 - 정규시장과 구제요건은 동일하며, 시간외접속매매에서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시간외접속매매의 최초 체결가격으로 정함
 - 해당 가격 대비 10% 초과하여 상승·하락한 경우 구제대상종목에 해당하며, 통상 직전의 가격을 의미
- 주식시장의 시간외접속매매 대상 시장조성자 관련 사항 신설(제31조의12, 제31조의17,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지 제2호의4 서식, 별지 제2호의5 서식, 별지 제2호의7 서식)
- 정규시장 시장조성계약과 별도로 시간외접속매매 대상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며, 의무수준·인센티브 등을 정규시장과 별도로 함
 - 별점은 시장조성자 자격정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양 시장을 합산하여 관리
-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일부 기준 조정(별표 2의4)
- (분기의무기준 완화) 시장조성자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척상 분기의무 이행기준 완화(90%→80%)
 - (인센티브 개선)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과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의무이행 적극성 평가 계산식 및 이에 따른 지급률을 변경
- ▷ 의무이행 적극성에 따른 지급률 산식

(기존) (의무호가유지비중 + 최우선후호가유지비중) ÷ 2

(개선) (의무호가유지비중 + 최우선후호가유지비중 × 2)
- ETF·ETN의 경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중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수량 요건 변경(제52조)
- 매매수량단위의 500배에서 1배로 조정
- 기타 조문 정비
- 시간외접속매매가 시간외단일가매매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이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51조의2, 제54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 회원착오매매의 정정 방법을 실무에 맞게 비상시로 구분하여 정비(제45조, 별지 제3호 서식)
 - 주기적 단일가 종목(30분)에서 호가폭주도 전산장애와 동일하게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30분 단위매매를 실시함에 따라 누락 근거 규정 정비(제56조)

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9/11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애프터마켓 시행에 대비하여 공시운영시간 이후 매매거래정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제도 폐지 등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운영시간 이후 보도 등 확인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명확화(제16조 제6항)
 - 퇴출 관련 사유 중 상장법인 외부에서 발생하여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한정
 - 부도 발생, 회생절차개시신청, 감사의견 미달,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공시위반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7조의5 제2항 제4호, 제12조 제3항, 제14조의2 제2항, 제24조 제5항)
 -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제도 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강화(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10점 이상)에 따른 조문 정비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6/9/9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글로벌 선진시장의 24시간 거래체계 전환에 맞추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종료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를 신설하기 위함
 - NYSE, NASDAQ은 아시아의 투자자 거래수요 유치 목적으로 24시간 체계 도입 추진 중

2) 주요 내용

- 정규시장과 같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하여 시장참여자의 참여가 용이한 방향으로 시간외접속매매를 도입(제4조)
 - 시간외접속매매 거래시간은 당일 16시부터 20시까지로 장종료후에 한정
 - 해당 종료시간에 맞추어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도 매매거래종료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
 -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증권종류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위임

-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시간외접속매매시 접속매매로 인한 시장 안정 목적 제도 추가 정비(제13조, 제21조의5, 제23조의3, 제27조의2)

- 사이드카는 시간외접속매매에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규정상 발동시간을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문구 추가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시간 중 당일 18시부터 20시까지는 시간외접속매매시간과 중복됨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사이드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오인 해석 가능
- 변동성완화장치(VI)는 접속매매에서 가격제한폭과 함께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장치임에 따라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도입
 - 최초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VI가 발동되며, 이 경우 정규장 종가를 참조
-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 또한 접속매매시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시간외접속매매에 도입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9/9 개정 · 2026/9/10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저PBR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 상법 개정 시행 2026.7.23.(법률 제20991호, 2025.7.22. 일부개정)

2) 주요 내용

□ 저PBR기업 선정요건 구체화(제43조의2)

- 최근 3년(6개 반기)의 정기보고서 및 그 직전 정기보고서를 기준으로 PBR을 산정
- PBR이 최근 6반기 연속 업종별 하위 10%인 경우 저PBR기업으로 선정하되, 6반기 중 5반기가 업종별 하위 10%이면서 과거 7번째 반기 PBR도 업종별 하위 10%인 경우 저PBR기업으로 선정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반영(제53조 제2항 · 제3항, 별표 6, 별표 12, 별표 13,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 상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기존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지칭하는 부분을 '독립이사'로 변경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도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

-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권리락·배당락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제51조 제3항, 제59조 제4항)
 - 현재 시가총액은 상장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식이 발행은 되었으나 추가 상장되기 전 시가총액 과소 계상 우려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9/10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장종료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신설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장종료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관련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종목 명시(제25조의4)
 - 시간외접속매매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 등 제외
 -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등
- 시간외접속매매에서의 호가입력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정비(제6조, 제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52조의3)
 - (호가접수시간) 당일 16시부터 20시까지로 시간외접속매매 거래시간과 동일
 - 해당 거래시간에 맞추어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도 호가접수종료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
 - (호가의 유형 및 조건)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우리지정가만 허용하며, IOC, FOK 조건 부여 가능
 - (위험관리장치) 시간외접속매매도 정규시장과 동일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임에 따라 알고리즘 거래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SMP), 접속해제 호가 취소(COD), 계좌단위호가처리(Kill Switch)의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근거 마련
- 시간외접속매매시 시장 안정 목적 제도사항 정비(제9조의4, 제20조, 제30조의2, 제35조의2, 제35조의4)
 - (공매도)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함에 따라 업틱 및 업틱률 예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정규장 종가를 직전가격으로 참조
 - (매매거래정지 등)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임시정지, 종목별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전산장애에 따른 호가의 취소, 호가접수의 정지 및 매매거래의 중단 가능

- 정지·중단 이후 매매거래의 재개는 접속매매로 결정하나, 해당 사유 발생 이전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된 경우 단일가매매로 결정
 -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 접속매매시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시간외접속매매에도 적용
 - 정규시장과 구제요건은 동일하며, 시간외접속매매에서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시간외접속매매의 최초 체결가격으로 정함
- 주식시장의 시간외접속매매 대상 시장조성자 관련 사항 신설(제12조의10, 제12조의15, 별표 5, 별표 5의3, 업무서식 6의3, 업무서식 6의4, 업무서식 6의6)
- 정규시장 시장조성계약과 별도로 시간외접속매매 대상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며, 의무수준·인센티브 등을 정규시장과 별도로 함
 - 별점은 시장조성자 자격정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양 시장을 합산하여 관리
-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일부 기준 조정(별표 5의3)
- (분기의무 기준 완화) 시장조성자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척상 분기의무 이행기준 완화(90%→80%)
 - (인센티브 개선)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과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의무이행 적극성 평가 계산식 및 이에 따른 지급률 변경
- ▷ 의무이행 적극성에 따른 지급률 산식

(기존) (의무호가유지비중 + 최우선후호가유지비중) ÷ 2

(개정) (의무호가유지비중 + 최우선후호가유지비중 × 2)
- 기타 조문정비
- 시간외접속매매가 시간외단일가매매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이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7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의7, 제28조의8, 제40조)
 - 자기주식매매신청서 및 착오매매정정신청서 제출 방법 정비(제10조, 업무서식 8)
 - 주기적 단일가 종목(30분)이 전산장애나 호가폭주로 인한 매매거래 중단 이후 매매거래가 장중 재개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30분 단위매매를 실시함에 따라 근거 규정 정비(제28조)
 - 시간 표기의 24시간제 전환,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제6조, 제7조,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5조의3, 제28조, 제37조의2)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9/11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애프터마켓 시행에 대비하여 공시운영시간 이후 매매거래정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운영시간 이후 보도 등 확인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명확화(제18조 제8항)
 - 퇴출 관련 사유 중 상장법인 외부에서 발생하여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한정
 - 부도 발생,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감사의견 미달,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26/9/2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해당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하여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타 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 관련 요건 · 절차 마련(제2조, 제3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8조)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 관련 시장이전기업 정의 신설
 - 시장이전기업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요건 및 절차 신설
 -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와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심사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 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폐지가 예상되나 영업이익·자기자본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재무요건 적용기준 충족

구분	수익성 기준	자기자본 기준	자본잠식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 존재	-	자본잠식
②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영업이익 존재	자본총계 200억 이상	없을 것
요건 ① 또는 ②에 해당			

— 시장이전기업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 및 소속부 구분에 시장이전기업부 신설 등 관련 제도 마련

• 기존의 기술평가기업, 클라우드펀딩기업과 동일

3) 관련 규정 개정

□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2026/9/23 개정 · 시행)

— 상장심사 관련 조문 정비(제5조, 제10조)

- 상장심사과정에서 기초자료 및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시장이전기업을 포함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9/2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시가총액 미달 사유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부 요건, 절차 등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타 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 관련 요건 · 절차 등 마련(제12조, 제13조의8, 제13조의9, 제14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7조, 상장서식3-1, 상장서식6, 상장서식21, 상장서식 22-2)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 관련 시장이전기업 신설에 따른 세부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재무건전성 적용기준에서 수익성 기준 : 사업보고서 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연결재무제표 기준)
- 자기자본 및 자본잠식 기준 :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 보고서 중 보고기간의 말일이 가장 최근인 보고서 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연결재무제표 기준, 비지배지분은 제외)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9/2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 ‘금융 · 외환 · 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2026.9.4, 관계부처 합동) 관련 조치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시장이전을 하는 시장이전기업의 경우 유동성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지정자문인 선임이 일정 기간 유예됨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유동성공급의무 면제 관련 조문 정비(제22조)
 - 유동성공급의무의 면제 관련 규정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시장이전기업을 포함

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9/11 개정 · 2026/9/14 시행)

1) 개정 이유

-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애프터마켓 개설 및 시간외시장 연장에 따라 기준일종목 미납부에 의한 당일 Buy-in 운영시간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매입인도 전 납부시한 변경(제27조 제1항 · 제2항)
 - (기존) 시간외시장 종료 50분전까지 → (개정) 17시 10분
- ☐ 매입인도 실행시간 변경(제27조 제4항)
 - (기존) 시간외시장 종료 10분전부터 10분간 → (개정) 17시 50분부터 10분간

하.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2026/9/10 개정 · 2026/9/1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저PBR기업의 선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PBR 산정 대상 기업(제3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PBR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제외
 - 외국기업, 감사인 의견 미달 기업,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등
- PBR 산정(제4조)
 - PBR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매매거래일의 일평균 시가총액을 최근 평가 대상 정기보고서상 순자산액으로 나누어 산정
 - 저PBR기업 공표일(매년 5월 및 11월의 최초 매매거래일)의 7영업일 전
- 업종분류(제5조)
 -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에 따라 상장법인의 업종을 분류
- 저PBR기업의 선정(제6조)
 - PBR이 최근 6반기 연속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00분의 25,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0분의 10
 - 최근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때에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이 기준 이하인 경우 저PBR기업으로 선정
- 저PBR기업의 공표(제7조)
 - 저PBR기업 공표일에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
- 저PBR기업 공표 제외(제8조)
 - PBR 기준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공표 대상에서 2회 제외

- PBR이 최근 12반기 연속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은 공표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00분의 25,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0분의 10
- 최근 12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때에는 과거 13번째 반기의 PBR이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고난도 ELS 낙인(Knock-in) 근접 알림)
-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국민성장펀드의 판매회사 변경 예외 허용)
- 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파생결합상품의 설계 점검기준 신설 및 기초자산 관리체계 도입)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6/9/10 개정 · 2026/12/1 시행)

1) 개정 이유

- 고난도 ELS 낙인근접 사전안내 등 투자자 안내 강화 등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안’ 공표(금감원, 2026. 8. 5)

2) 주요 내용

- 고난도 ELS 낙인(Knock-in)근접 알림(제2-5조의4 제2항)
 - 낙인배리어 근접(만기전 최초 손실조건에 기초자산 기준가격의 10%p 이내)시 사전 안내(최초 1회)
 - 현재 기초자산가격, 자동조기상환 조건, 예상수익률, 공정가액 등 통지
- 중도상환 안내 강화(제2-5조의4 제3항)
 - 조기상환 순연(실패) 안내시 중도상환 선택 가능 사실 및 방법 등 추가 안내
- 재투자 유의사항 안내(제2-5조의4 제4항)
 - 자동 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황 수익실현 투자자에 대한 재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가 수익상환 후 동일한 상품에 다시 가입하여도 기초자산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상환 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6/9/21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대상 펀드는 판매회사 변경이 제한되고 있으나, 환매금지형으로 설정된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환금성 부여를 위해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하여 상장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할 필요에 의함

[펀드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

- ▷ (개요) 상품별 특성, 세금 처리 등으로 판매회사 변경제도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는 이동 대상에서 제외함
- ▷ (대상) 판매회사별 처리절차 및 시스템 상이, 판매회사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야하는 문제, 세금 관련 이슈로 인해 판매회사 변경이 어려운 펀드에 한함
 - 판매회사별로 투자자 가입일, (추가)납입일, 수익률 산정 등 관련 기준 및 시스템이 달라 판매회사 변경이 투자자의 최종적인 세제혜택 수혜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MMF, 세제혜택펀드 등

2) 주요 내용

- 변경대상 제외 펀드(제40-1조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한하여,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경영금융투자회사에서, 경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2026/9/10 개정 · 2026/12/1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결합상품의 설계 · 심사 · 판매 · 사후관리 전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체계 강화를 준칙에 반영하기 위함
 -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안’ 공표(금감원, 2026. 8. 5)

2) 주요 내용

- 상품설계 점검기준 신설(II. 4. 2))
 - 상품설계시 필수 점검항목 제시, 체크리스트 작성 및 동일성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의무화

□ 기초자산 관리체계 도입(II. 4. 3))

- 기초자산 풀 관리 및 선정 기준 마련, 기준에 따른 기초자산 선정 및 상품 설계
 - 기초자산 풀 신규선정·변경시 상품승인위원회 또는 이사회 승인 의무, 정기점검 실시

□ 상품승인절차 강화(II. 4. 4))

-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및 심의기능 강화
 - 상품승인위원회 구성시 소비자보호·준법감시 판매부서 포함, 상품승인위원회 심의·결정시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의 상품 출시 보류 권한 부여 등

□ 상품 점검(II. 9.)

- 자율점검(연1회→분기1회)주기 및 이사회 보고 주기(연1회→반기1회) 단축, 부적합 판매비율 내부 설정 및 관리 지표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